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등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위원회사무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환경피해 구제 관련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통합환경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화, 존속기한 연장이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6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

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면서 환경피해 구제 관련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이체함.

나.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7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7.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9장의 제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한다.

제49조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33”을 “629”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2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2”를 “588”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1,831”을 “1,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31”을 “1,8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2”를 “1,801”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6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9장의 제목, 제49조,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환경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631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
일반직 계	625
고위공무원단	15
3급 또는 4급 이하	590
전문직공무원	17
전문경력관	3

[별표 4의2]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1,816
일반직 계	1,816
고위공무원단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1,797
전문경력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② (생략)	제2조(소속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 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 회사무국을 둔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장 <u>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 무국</u>	제9장 <u>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사무국</u>
제49조(직무) <u>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사무국</u>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u>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u>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 리한다.	제49조(직무) <u>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사무국</u> ----- ----- <u>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의</u> ----- -----.
제50조(국장) ①·② (생략)	제50조(국장)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국장은 <u>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위원장의</u> 명을 받아 소관사 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③ ----- <u>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위원장</u> ----- -----

지휘·감독한다.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0조(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② 삭제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④ 삭제

-----.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0조(한시정원) ① -----

----- 2025년 12월 31일-----

-----.

③ -----

2026년 12월 31일-----

---.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u> ⑥ <u>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u> ⑦ ~ ⑨ (생략)	⑤ ----- ----- ----- ----- <u>2027년 12월 31일</u>----- ----- -----. <삭 제> ⑦ ~ ⑨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3</u>	<u>629</u>	-4
·	·	·	
·	·	·	
일반직 계	<u>627</u>	<u>623</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2</u>	<u>588</u>	-4
·	·	·	
·	·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31</u>	<u>1,820</u>	-11
일반직 계	<u>1,831</u>	<u>1,820</u>	-1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12</u>	<u>1,801</u>	-1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5